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곽규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4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30.

발 의 자 : 곽규택 · 정성국 · 김선교
조승환 · 백종현 · 박수영
김미애 · 최보윤 · 유상범
김기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항만 재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또는 항만청이 주도적인 개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,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. 이로 인해 토지와 분리된 건축물만의 매각이 원칙적으로 불가하여 민간 투자 유치 및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뜻하는 건축물 · 공작물 등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,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분양,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1항제2호의2).

법률 제 호

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2호의2 중 “항만재개발사업”을 “항만재개발사업(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를 포함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사업)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· 2. (생 략) 2의2. 「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<u>항만재개발사업</u>	제8조(사업) ①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2의2. ----- ----- ----- <u>항만재개발사업</u> <u>(항만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분양 또는 임대를 포함한다)</u>
2의3. ~ 8. (생 략) ② · ③ (생 략)	2의3. ~ 8. (현행과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